##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68 발의연월일 : 2024. 11. 5.

발 의 자:김영배·박홍배·이기헌

권향엽 • 이개호 • 강유정

박선원 • 이정문 • 홍기원

김태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는 촬영물·영상물 등을 통해 성폭 력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 사진·영상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법률 제 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를 "(인공지 능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
| 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        | <u> </u>                 |
| 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                          |
|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                          |
|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                          |
|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                          |
| 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        |                          |
| 집·합성 또는 가공 <u>(이하 이</u> |                          |
|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             |
|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 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         |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u>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u> |
|                         |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을 포함          |
|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       |
|                         | 이라 한다)                   |
|                         |                          |
|                         |                          |
|                         | <u>.</u>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